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3541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6. 26.

판 결 선 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6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20,000원, 등록면허세 3,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600,000원, 등록면허세 12,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2,400,000원, 등록면허세 1,800,000원 및 지방교육세 36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 설립되었고, 2012. 5.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28.부터 2013. 12. 24.까지 총 4건의 유상증자(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증자'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년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의 경우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년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의 경우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모두 면제받았다.

다. 안전행정부는 2014. 2. 6. 이 사건 감면규정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며, 괄호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창업일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의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증자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등록면허세 합계 17,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3,48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창업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고, 원고의 이 사건 증자는 위 규정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증자등기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 납부서를 발급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증자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고, 원고는 당시 중소기업청 및 벤처기업협회 안내 자료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6조에서 '2012년 12월 31일(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제2항) 각 규정하고, 제119조 제2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제2호,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에 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제3호,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에 대하여 각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감면규정, 즉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원고의 이 사건 각 증자등기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다음의 (1) 내지 (4)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은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및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의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6조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다른 감면규정, 즉 같은 법 제31조 4항, 제120조 제3항, 제121조 등에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각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와 같이 서두 부분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병기하여 해당 감면혜택이 양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119조 제2항에서도 각 호의 서두에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고(제1, 2호의 경우 각 창업중소기업, 제3호의 경우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이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은 법인설립 등기 및 증자등기의 주체인 창업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을 뿐(제119조 제2항 제3호) 그 이후의 증자등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해서도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의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라면, 별도의 규정(제119조 제2항 제3호)에서 법인설립 등기만을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규정과 같은 형식으로 위 제3호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9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를 각 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취득 관련 등록세와 취득세가 취득세로, 취득 무관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면서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119조 제3항 각 호에서 등록면허세의 면제를, 제120조에서 취득세의 면제를 각 규정하였는데, 입법자가 위 개정을 통해 나머지 면세 대상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만을 새로이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보기 어렵다.

(4)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의 경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벤처기업의 경우 2014. 12. 31.까지 확인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면허세 면제를 규정하였고, 이는 취득세 및 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바,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19조 제2항 제1호의 증자등기에 대한 면세규정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볼 경우 나머지 면세 규정과는 달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의 경우에만 면세의 범위가 2015. 12. 31.까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로 넓어지게 되어 나머지 규정들과 조화되지 않고, 입법자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해서만 그러한 혜택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그러나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2007두19454(병합)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한 경우에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령해석 등을 잘못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통지서나 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이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참조),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자에 대하여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등록면허세를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0원'으로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 중소기업청이 포털사이트 'NAVER'의 '지식iN' 서비스에서 일반인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벤처기업의 세제혜택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2013. 5. 22.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가 감면되고,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며, 창업일로부터 5년간 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토세의 50%가 감면된다'는 취지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2014. 5. 20.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창업일(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간 면제되고, 재산세는 창업일(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5년간 50% 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제된다'는 취지로 각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한 것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데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중소기업청의 'NAVER'의 '지식iN' 서비스 답변의 경우 중소기업청은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관청이나 징수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답변은 이 사건 감면규정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벤처기업의 세제 혜택이나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방법 등을 추상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것이지, 구체적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대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질의한 데에 따른 것이 아닌 점, ③ 또한, 위 중소기업청의 답변은 원고에 대한 견해표명이 아닐 뿐더러, 각각 2013. 5. 22.과 2014. 5. 20.에 이루어진 것인바, 원고가 2012. 6.경, 2012. 7.경, 2013. 3.경 및 2013. 12.경에 이 사건 각 증자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중소기업청의 답변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각 증자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원고는 이외에 벤처기업협회에서도 안전행정부의 이 사건 회신이 있기 전까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등록면허세 면제에 관한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인 벤처기업협회의 홈페이지 게재 내용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④ 이외에 달리 신뢰보호의 원칙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강효인

판사 장인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31

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